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2009. 9. 17
규정 제496호]

안전지원센터 02-6311-3554

일부개정 2010. 7. 26 규정 제550호
일부개정 2011. 9. 26 규정 제609호
다규정개정 2012. 2. 13 규정 제635호
전부개정 2014. 1. 23 규정 제734호
다 규정 개정 2014. 9. 17 규정 제757호
2014. 12. 26 규정 제778호
2015. 8. 13 규정 제841호
2015. 11. 26 규정 제8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승강장안전문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정상 기능 확보와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26.)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승강장안전문설비와 이에 관련된 부대설비의 유지보수와 운용관리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5.11.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강장안전문설비(PSD : Platform Screen Door)”이라 함은 승강장 연단에 안전보호벽 및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여 승강장과 선로측을 차단함으로써 역사내의 승객 안전을 확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5.11.26.)

1의2.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벽체를 말하며, 비상문·선로출입문·기관사출입문 등을 포함한다. (신설 15.11.26.)

2. “유지보수 업무”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가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15.11.26.)

3. “승강장안전문설비 보수자”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5.11.26.)

4.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자”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직접 운용하는 기관사와 역직원을 말한다. (개정 15.11.26.)

5. “점검”이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기능·동작상태 등 승강장안전문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5.11.26.)

6. “보수”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정·수리·교체 등에 의해 승강장안전문설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15.11.26.)

6의2. “개량”이란 설비의 노후 및 고장 등으로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개선, 부품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2.26)

6의3. “교체”란 설비의 노후, 고장 등으로 보수가 불가하거나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12.26)

6의4. “기대수명”이란 시스템의 설치 당시에 기대했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12.26)

7. “바이패스(By-Pass)”라 함은 설비의 고장발생·문열림 또는 그 밖의 상황 등 설비의 고장 상태를 무시토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8. “바이패스 설정”이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가 고장 등으로 열린 상태에서 열차 진입 및 출발이 가능하도록 종합제어반·승강장조작반·기관사조작반에서 “바이패스 설정”으로 정자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5.11.26.)

9. “바이패스 해제”라 함은 “바이패스 설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험장비(Test Bench)”라 함은 중고장 수리 등이 필요한 모듈·예비부속장치 등을 점검·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1. “종합제어반”이라 함은 고객상담실에 설치하여 설비제어 및 동작상태를 표시하며, 역사내 각 조작반·각종 제어장치 및 신호설비·승강장 안전문 관제설비 등과의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12. “승강장조작반”이라 함은 승강장 중앙부에 설치하여,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조작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3. “기관사조작반”이라 함은 승강장에 설치하여 기관사가 승강장안전문의 개·폐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또한 승강장안전문의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5.11.26.)

14. “개별제어반(DCU : Door Control Unit)”이라 함은 승강장안전문마다 상부에 설치하여 종합제어반(RF장치 포함)과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고 고장 및 점검 시 승강장안전문을 개·폐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5.11.26.)

15. “지상 RF장치”라 함은 승강장에 설치되어 전동차 차상 RF장치와 통신하여 종합제어반 또는 개별제어반과 인터페이스 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차상 RF장치”라 함은 전동차 전·후부 운전실에 설치하여 지상 RF 장치와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7. “정위치정차 검지장치”라 함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 시 정위치 정차 위치에 대한 거리인식 및 정위치 정차여부를 검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18. “기관사안내장치(HMI : Human Machine Interface)”라 함은 기관사에게 열차의 정위치정차 상태 및 설비의 동작상태와 이상유무 등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19. “승강장안전문”이라 함은 열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동작하며, 승객이 열차를 승·하차하기 위한 출입문을 말한다. (개정 15.11.26.)

20. “안전보호벽(비상문)”(이하 “비상문”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동차 1량당 2조(4쪽)씩 설치되어 비상문 중앙의 가로막대(패닉바)를 밀어서 열리는 출입문을 말한다. (개정 15.11.26.)

21. “안전보호벽(선로출입문)”(이하 “선로출입문”이라 한다)이라 함은 승강장 전·후부에 설치하여 비상 시 또는 유지보수 시 선로측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말한다. (개정 15.11.26.)

22. “안전보호벽(기관사출입문)”(이하 “기관사출입문”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사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출입문을 말한다. (개정 15.11.26.)

23. “유지보수전산기”라 함은 기술사업소에 설치되어 관할 구간의 설비상태 조회·감시 및 장애·운용 기록 관련 통계 보고서 등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4.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앙전산기”란 메인서버와 스토리지 서버로 구성되며, 통상 승강장안전문설비 서버라고 말한다. (개정 15.11.26.)

25.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앙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담당자”란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감시와 필요시 원격제어 및 중앙관제시스템의 운용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5.11.26.)

26. “메인서버”란 각 역사와의 통신·알람·시간 동기화·파일서버·웹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역할을 하며, 감시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장비를 말한다.

27. “스토리지 서버”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8. “승강장안전문설비 워크스테이션”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앙감시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엔지니어링 시스템·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15.11.26.)

29. “감시시스템”이란 각 역사의 승강장안전문설비 상태정보·알람·통신상태 등을 표시하며 운용기록 조회 및 승강장안전문설비에 대한 열림/닫힘/바이패스 등의 일부 제어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15.11.26.)

30. “유지관리시스템”이란 각 역사 종합제어반의 파라미터 및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기능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종 보고서를 조회 및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31. “엔지니어링시스템”이란 각 역사의 승강장안전문설비 관련 파라미터와 펌웨어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백업 드라이버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저장매체에 백업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개정 15.11.26.)

32.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 Network Management System)”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앙감시장치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고 이벤트를 저장하여 데이터량을 모니터링 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15.11.26.)

33. “장애물검지센서”라 함은 구조체 측면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물건 등을 검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34. “역사 승강장안전문설비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각 역사 i 센터에 설치되어, 승강장안전문설비 상태정보·통신상태 등을 표시하며 승강장안전문설비 여닫음 상태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15.11.26.)

35. “구동부”라 함은 개별제어반으로부터 동력 및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설비의 승강장안전문을 개·폐시키는 구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15.11.26.)

36. “유니트(Unit)”이라 함은 설비의 기본 단위로서 동일 형상이며 제작·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구동부·개별제어반·가이드레일·강화유리·연접기구·지지철물·마감재 등)를 포함한다.

37. “승강장안전문설비 구조체”라 함은 H-빔·새시·도어부·구동박스·도어턱(가이드레일)·더미부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15.11.26.)

38. “전원장치”라 함은 승강장안전문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축전지·정류기 또는 무정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개정 15.11.26.)

제4조(유지보수자의 의무) 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15.11.26.)

제5조(승강장안전문설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의 업무한계)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운용과 유지관리에 따른 관련 부서의 업무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1.26.)

1.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관제시스템은 종합관제센터장이 운용 및 유지관리 한다. (개정 15.11.26.)
2.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시험장비는 기술지원단장(통신전자 부장)이 운용관리 한다.(개정 2014.9.17., 15.11.26.)
3. 소장이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고한 PCB류, 기타 부속장치 등의 정비는 기술지원단장(통신전자 부장)이 운용관리 한다.(개정 2014.9.17., 15.11.26.)
4. 전동차 내 차상 RF장치는 차량정비처장이 유지관리 한다.(개정 2014.9.17.)

[조 제목 개정 15.11.26.]

제6조(금지사항) 사장의 승인 없이 장치의 변경, 소프트웨어를 변경시키는 일. 다만, 조건상 보완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안전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승인으로 변경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4.9.17., 15.8.13)

제2장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관리

제7조(비상시 출입문 운용) 역장은 화재 등 비상 시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 전원장치 고장 등으로 승강장안전문이 자동으로 개·폐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제어반 또는 승강장조작반에서 비상모드를 설정하고 모든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제8조(승강장안전문설비 운전자) ①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설비의 훼손·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종합관제센터장 및 관련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② 역장은 『관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열차운행 및 영업준비 상태 보고) 관련하여 승강장안전문설비 이상 시 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조 제목 개정 15.11.26.]

제9조(출입문 비밀번호 관리) 선로출입문과 기관사출입문의 비밀번호는 센터장이 선정하여 종합관제센터장 등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15.8.13)

제10조(바이패스 설정 조건)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하기 전과 출발 시 바이패스 설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장안전문설비 장애(전원, 개별제어반, 승강장안전문 잠금장치 등) 발생 (개정 15.11.26.)
2. 승강장안전문이 안단힌 경우 (개정 15.11.26.)
3. 기타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11조(바이패스 설정 방법) ①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하기 전 승강장안전문설비 장애와 관련하여 속도코드가 정지신호(01신호)일 경우에 기관사는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합관제센터장은 역장에게 바이패스 설정을 취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② 승강장에서 열차 출발 시 승강장안전문설비 장애와 관련하여 속도코드가 무신호(02신호)일 경우에 기관사는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합관제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바이패스 설정 취급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③ 종합제어반 및 승강장조작반에서 바이패스를 설정한 후, 정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바이패스 설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바이패스 설정 및 해제 통보) ① 바이패스 취급자는 바이패스 설정 및 해제 사항을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제센터장은 바이패스 설정 및 해제 사항을 해당역으로 운행하는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 제목 개정 15.11.26.]

제3장 승강장안전문설비 유지관리

제13조(점검의 종류)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운용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1.26.)

1. “일상점검”은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상태의 이상 유무를 순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5.11.26.)
2. “정기점검”은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기능을 일정 주기별로 주요부분의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개정 15.11.26.)
3. “임시점검”은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신설·개조 등을 하였을 경우와 기능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일부 또는 기능 전반에 대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개정 15.11.26.)
4. “특별점검”은 승강장안전문설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고장의 우려가 있다고 예측될 때,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5.11.26.)

제13조의2(검사기준 및 정비요령, 점검방법) 시스템의 검사기준 및 정비요령, 점검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12.26]

제14조(점검의 생략) 제13조에 의하여 임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책임자 및 시행자) ① 시스템의 점검은 소장이 작성한 예정표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소장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에 의해 시행한다.

② 소장은 시스템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규정 또는 연간 안전점검계획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점검결과와 보고 및 처리) ① 제13조에 따른 점검 결과는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소장은 정기점검의 연간실적을 센터장을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8.13)

② 소장은 각종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 시 종합관제센터장과 역장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고사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보수작업 계획 수립) ① 소장은 승강장안전문설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점검결과 및 시설의 상태에 따라 보수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② 소장은 필요 시 보수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입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용 도서비치) 소장은 보수에 필요한 관련 도서 및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정비하여 항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① 시스템을 관장하는 각 소장은 다음 연도의 점검·보수·교체 및 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5.8.13)

② 센터장은 기술사업소 및 자체 계획을 검토 후, 승강장안전문설비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안전관리 체계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15.8.13, 15.11.26.)

[본조 전부개정 2014.12.26]

제19조의 2(이행계획(점검, 보수, 교체, 개량))대상 선정기준 시스템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선정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12.26]

제20조(유지관리의 기록) ① 소장은 각종 점검의 결과 및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의 조치 등에 관하여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의 점검 및 검사표에 필요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5.11.26.)

② 검사 및 점검표는 내규로 정한다. 단, UTIMS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수기 작성한다.

③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설물 이력 및 유지보수 부품의 관리는 공사의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 및 SMRT - UFFICE 시스템 운영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14.12.26)

[조 제목 개정 2014.12.26.]

[장 제목 개정 15.11.26.]

제4장 승강장안전문설비 고장 및 보고

제21조(장애조치) ① 소장은 장애 상황을 수보하였을 때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 운행으로 즉시 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 한 후, 열차 운행 종료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복구시 준수사항) ① 승강장안전문설비 보수자는 장애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강장안전문설비 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승강장안전문은 개방상태로 유지하여 승·하차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하여야 하며, 해당역에 승강장 안전요원 지원요청 후 신속히 종합

관제센터장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장애의 상황에 따라 응급복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장애복구 작업 종료 시 각 설비의 동작상태를 시험하여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장애복구 작업 시작과 종료사항에 대하여 종합관제센터장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사고 보고) 소장은 중대 장애 발생 시 별표 사고보고 계통도에 의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 제목 개정 15.11.26.]

부칙(제734호,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4.9.17)

사고보고 계통도

